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현원을 확인한 결과, 원주시 “○○어린이집” 등 10개 법인은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2명)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원주시 “○○○○○사회복지회” 등 11개 법인은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선임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선군 “○○○○재단” 등 2개 법인은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를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 삼척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양양군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